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954

발의연월일: 2024. 8. 19.

발 의 자:이정문·정성호·조승래

강준현 • 전현희 • 문진석

이상식 · 이연희 · 문금주

이병진 • 어기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어 이전 대비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도 재편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통신판매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거래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규율체계도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관하여 별도규율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중국・일본 및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와 관련한 입법도 본격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 체계 및 용어 재정비(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 1) 최근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기능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게재,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대행, 청약철회 접수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 및 그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우편·카탈로그 등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의 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 거래구조 및시장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 이에 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이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거래방식 및 관여도 등에 따라 중개, 연결수단 제공, 전자게시판 제공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나.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안 제16 조)
 - 1) 특정 소비자의 기호·연령·성별·소비성향 등의 특징에 따라 그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는 이를 일반광고와 구분하기 어려워 구매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제약받고 있음.
 - 2) 이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가 맞춤형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 다. 위해방지 협조의무(안 제18조 및 제27조)

- 1) 핵심 유통채널로 부각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리콜제도가 도입된 개별법에는 제조·판매자에 대한 리콜명령·권고 규정은 있는 반면, 중개업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한 경우가 있음.
- 2) 이에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중앙·지방정부가 리콜명령 등 발동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직접 리콜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 중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구조의 특성 상 소비자·플랫폼·입점업체의 3자가 관련된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가 필요하므로, 한국소비자원에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마.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58조)

전자상거래에서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는 동시다발

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송비용 및 소송기간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

사.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 완화(안 제59조)

사기사이트 폐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서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그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므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백한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로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표시·광고의 중지·삭제, 청약철회 방해 문구의 삭제, 사이트 내 경고 문구의 게시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법률 제 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 (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 2. "비대면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중 인터넷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3. "선지급식 전자상거래"란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거래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비대면 전자상거래 를 말한다.
- 4. "온라인 플랫폼"이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5.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인터넷 등 가상의 영업장을 제 공하거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의 청약 접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거래를 중 개하는 서비스
 - 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재화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플 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에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9호의 게시판(공개범위 설정에 따라 제한된 상대에게만 공개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전자게시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비대면 전자상거래 또는 가목에 따른 거래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전자게시판을 제공하는 서비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서비스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결제. 배송지원 및 고객 관리 등의 서비스
- 6.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재화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비대 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8. "자체 인터넷몰등 이용사업자"란 자체 인터넷몰을 통하여 재화등을 거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대면 전자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9.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 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10.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1.1. "호스팅서비스"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제4호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12.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란 우편, 카탈로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있다.
 -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

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및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등"이라 한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제5조(온라인판매사업자의 신고 등) ① 자체 인터넷 사이트 등 이용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온라인판매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

래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④ 온라인판매사업자는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온라인판매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정 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신원정보의 제공) 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 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3. 제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②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온라인몰에 게시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 또는 영업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온라인몰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상호 등 신원정보 제공과 관련한 표시·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 2. 재화등의 명칭 · 종류 및 내용
 - 3.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 4.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5.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 7.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 8.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 요한 기술적 사항
- 9.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10. 거래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 1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 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 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 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0조 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3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2.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온라인판매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 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 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④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증액 또는 전환의 일시, 변동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대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①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이하 "전자적 대금지급"이라 한다)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등의 가격
 - 3. 용역의 제공기간
 - ③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송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온라인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사용상의 제한이나 그 밖의 주의 사항 등을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자결제업자등은 대금지급 관련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한다.
- 제9조(청약확인 등) 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② 온라인판매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제10조(재화등의 공급 등) 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지급식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온라인판매사업자 간에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는 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선지급식 전자상거래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 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1조(청약철회등) ① 온라인판매사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2.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 우 또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3.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 다. 다만,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 (이하 "디지털콘텐츠"라 한다)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었는 경우에는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⑥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온라인판매사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 2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 1.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 2.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3.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③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

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판매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온라인판매사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온라인판매사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소비자는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 업자에게 그 온라인판매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온라인판매사업자 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온라인판매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 ①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 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판매사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제1항의 경우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

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⑨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온라인판매사업자가 부담한다.
- ① 온라인판매사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역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3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온라인판매사업자는 휴업기간이나 영업정지기간에도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소 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반환된 재화등의 통상 사용료 또는 그 사용으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나. 반환된 재화등의 판매가액(販賣價額)에서 그 재화등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뺀 금액
- 2.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등의 판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손해배상청 구에 따른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손 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15조(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등을 하는 사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 거래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 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 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 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 제16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등을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가 도용(盜用)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자의 기호·연령·성별·소비성향·구매내역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재화등에 관한 광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7조(온라인판매사업자의 협력의무)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경우 그 온라인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온라인판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

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협조의무) ①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재화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개선, 시정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수·수거·폐기 또는 판매중지 등 온라인판매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 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그 조치의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및 의견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다.
 - ④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배송사업자의 의무)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재화등을 배송(정보

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자는 배송 사고나 배송 장애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0조(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의무) ①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공정거래위원회
 -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4. 수사기관
 - 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21조(우편·카탈로그 등 거래에의 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 조부터 제14조까지, 제18조 및 제19조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 또 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 각 조항 중 "전자상거래"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로, "온라

인판매사업자"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각각 본다.

- 제22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2. 주소 또는 영업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
 - 3.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4. 사업자등록번호
 - 5.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조제5호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조제5호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

하여야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증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2조제2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등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등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조제5호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항의 "온라인판매사업자"와 제8조 및 제66조의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본다.

- 1.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
 - 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
 -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가. 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 나. 제66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의 방지
 - 다.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5조(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분쟁해결의무 등) 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조제5호 가목 또는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2조제5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 내하고 권고할 것
-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
- 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2. 공정거래위원회
- 3.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제27조(위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하거나 권고한 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해당 재화등의 판매행위를 즉시 차단하거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해당 명령의 대상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조치의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명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구체적 내용·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준용)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고, 제2조제5호다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해당조항의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본다.
- 제29조(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7조제1항제9호 및 제4항에 따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소비자 불

만등의 처리 이행

-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소비자 불만이 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3. 제6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물건의 제출 등
- 4.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8조에 따른 문서의 송달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온라인판매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③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이 이용·운영하는 온라인몰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 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온라인판매사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이용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 및 제3항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등을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3.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 4.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5.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7.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8.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 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1조(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 래등을 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라인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 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 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

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방 및 소비자보호 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관련 분 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1절 총칙

- 제32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 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이 조 에서 "소비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소비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 제3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0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식 전자상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은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2.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3.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등을 구매하는 거래
- 4.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 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

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④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 발행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 ⑦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 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거 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업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아니한 사업자는 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등"으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각각
- ①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상거래"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로, 제2항의 "온라인판매사업자"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를 하는 사업자"로 본다.
- 제34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 대등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절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소비자원의 원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자상거래 또는 소비자권익과 관련 있는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사람
 -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상거래 또는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3.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자상거래 또는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 5.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만, 사업자의 임원의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 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 에 있는 사람
-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집행유예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⑨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위원의 위촉해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3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신청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 는 경우
 -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

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각하(却下)한다.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 제39조(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며, 회의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균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제36조제2항제6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있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회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 1. 분쟁조정회의: 위원장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명의 상임위원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2. 조정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명의 상임위 원과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 ② 분쟁조정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조정부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주관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40조(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①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 2. 제46조에 따라 의뢰 또는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 3. 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4. 조정위원회 내부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조정부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제41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제40조의 조정사항에 관하여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그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6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2조(분쟁조정의 의뢰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5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조(분쟁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41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또는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 을 제시하고 분쟁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

- 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40조의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조정의 신청 전후에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2. 조정의 신청 후에 당사자가 「민사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1.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그 밖의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2.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제41조에 따른 조정을 신청 받은 날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① 조정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 나 조정절차를 중지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당사자에게 제56조에 따른 시정권고 및 제57조에 따른 시정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 제45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제4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이 이행된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시정권고 및 제5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 제46조(집단분쟁조정) ①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 제47(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제48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재개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제49조(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제35조부터 제48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장 조사 및 감독

- 제5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 회는 조사 등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조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 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지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5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5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의 구성과 조사에 관한 구 체적인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의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원의 임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2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의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 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 ②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 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이나 자료 공유를 거부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등 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 51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1.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 2.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4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 ① 전자상거래등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 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 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5조(보고 및 감독) ① 제56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 회 및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제56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7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이 법에 규정된 의무 또는 제57조에 따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방안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면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그 권고를 한 행정청에 알려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제5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 제5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 2항 및 제4항,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 항,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2 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같은 조 제 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2항, 제53조, 제62 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를 위반하는 행위(제5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는 제21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6조제 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 제10조, 제12 조,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19조는 제2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17조 및 제18조는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 3.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4.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
- 2. 시정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8조(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이 조에서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 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 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 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59조(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의 행위가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임시중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등에게 해당 서비스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등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 중지를 명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따라 재판을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0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제58조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강제징수의 예 따라 징수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1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7조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그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정도
-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
-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위반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횟수 등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인 회사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62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63조(전자문서의 활용)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와 미리 전자문서로 거래 할 것을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는 해당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 소비자도 이미 전자문서로 거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자는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전자문서를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문서의 효력, 수령 절차 및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전자문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을 이용하도록 강요(특수한 표준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특정한 전자서명 방법의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방법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 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

- 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 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온라인몰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자들은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제64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표시· 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 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주소·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범위·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6조(전속관할) 온라인판매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우편 ·카탈로그 등 거래를 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訴)는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전자상거래등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51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 ②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68조에 따라 위임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 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97조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19조를 준용한다.

제7장 벌칙

-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57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57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제1항(제21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33조제8항 및 제9항(같은 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제1항(제2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2. 제7조제1항(제2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거래 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과태료) ①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위반행위 또는 영업을 계속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6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제6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3.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 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 4.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온라인판매사업자로서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7. 제8조제4항에 따른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33조제7항(같은 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8. 제10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온라인판매사업자로서 제33조제7항 (같은 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
- 9.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21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제2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7조제1항(제2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 4. 제7조제2항(제2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래 상대 방인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제1호가목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제7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6. 제64조를 위반하여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에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⑤ 제6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4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

정을 적용할 때 제6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자상거래 등의 시장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 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상거래 등의 시장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3조(온라인판매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의 영업재개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

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